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96
----------	-------

발의연월일 : 2025. 7. 31.

발 의 자 : 김태선·조계원·이병진
안호영·김주영·박홍배
오세희·안도걸·김영환
박 정·이학영·이용우
허 영·서미화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공급, 최저주거기준 설정,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은 주거약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데,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주거약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에 주거약자의 범위에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를 포함함으로써 해당 아동·청소년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여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5
<u><신 설></u>	<u>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u>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u>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u>
	<u>밖 청소년 및 같은 조 제6</u>
	<u>호에 따른 청소년부모</u>
<u>다.</u> (생 략)	<u>마.</u> (현행 다목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